



「우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통장」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우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통장」

·상품특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106조의 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따라 "금 사업자" 및 "스크랩 등 사업자"의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히 지원하는 상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 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 1. 시행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시행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4.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 류표」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5.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품
가입금액	• 제한없음
거래방법	• 신규 / 해지 : 영업점

_	S. O =1 O #11
(40	<i>(</i>) 우리은행
/*	
h.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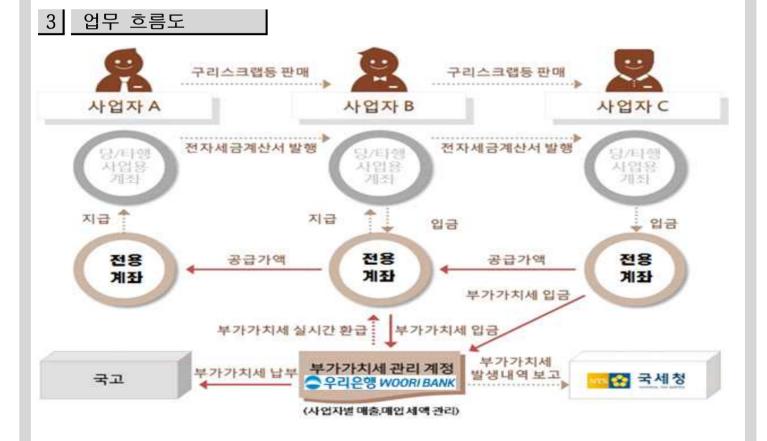
구 분	내 용
예금과목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적용이율	• 연 0.1% (세금 납부 전, 2024.07.01. 기준) ※ 적용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변경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 결산은 연 4회 3, 6, 9, 12월의 셋째주 금요일에 실시하며, 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자산출근거	•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 기간으로 하여,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함
수수료 우대	• 이 예금을 통하여 금 거래 결제 또는 스크랩 등 거래 결제를 위한 우리은행·타행 송금수수료 및 전자금융수수료, SMS수수료는 전액 면제 ※ 단, 예금 해지 및 일반예금 전환 시 수수료 면제 불가
거래제한 및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대상 품목 대금 결제 시, 물품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으려는 자 모두 본 통장을 통해서만 결제해야 합니다. ※ 일반 입·출금 또는 현금 결제 등 그 외 방식으로 결제 시 공급가액 10% 과태료 부과 대상 ● 특정 상품이 아니라, 기업자유예금 또는 보통예금 계좌를 전환하여 사용 ● 우리은행 外 6개 은행 공동판매 상품으로, 은행 간 중복개설은 불가 ※ 한 은행 내 다수 계좌는 가능 • 거래 가능 매체는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모두 가능 ※ 이용 매체 및 거래 종류는 거래 편의를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영업점 창구(영세율 거래제외) 및 스마트뱅킹으로는 즉시 결제만 가능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능
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4 402193	5H
1	(AN우리은'	
	ibank.com #	
	ank.c	
	ė	W.W.

구 분	내 용		www.wooribank
예금자보호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 다.	
세제혜택	가능	• 가입자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있음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 적용세율은 2024.07.01.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거래중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 제한 (1) 예금잔액이 10,000원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이상 50,000원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후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구 분	내용
위법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 1 우리은행



4 유의 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www.wooribank.com

4 유의 사항 - 계속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 매매대금 결제 시 거래 상대방의 계좌는 금 거래계좌(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 매매대금 결제 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정'으로 자동입금 합니다. 단, 매출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출자의 금 거래계좌(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입급합니다.
- · 금관련 제품 또는 스크랩 등을 공급받을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이 계좌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지 않거나 늦게 결제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산·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동 세액은 금 거래계좌(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입금합니다.
- ·이 통장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동되었을 때는 변동된 날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 기업금융솔루션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또는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